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18. 6. 20] [총리령 제1468호, 2018. 6. 20, 일부개정]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0. 3. 20] [총리령 제1601호, 2020. 3. 20, 일부개정]
제21조(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)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험물질을 말한다.	제21조(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) ①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 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군 감염병,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 키는 병원체	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 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 으키는 병원체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5조(규제의 재검토)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: 2014년 1월 1일	<u>&lt;삭 제&gt;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